제260회 임시회
광 진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14.

복지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28

2023. 3. 14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. 2. 27.

나. 회부일자 : 2023. 3. 8.

다. 상정일자 : 2023. 3. 13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고상순 의원

나. 제정이유

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지원대상 및 방법 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
라. 중복지원 금지 (안 제5조)

마. 환수조치 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3. 3. 4. ~ 3. 8.) 결과 : 별도 의견없음

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윤선영)

□ 의안번호 제2028호 **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」**은 2023년 2월 27일 고상순 의원이 제안하여 2023년 3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·회부된 안건임

□ 본 안건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

□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[1]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근거를 명시함

- 안 제2조는 정의로 “여성 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

1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

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로 규정함

-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을 명시함. 광진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고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(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)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음

-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임. 본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고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 환수하도록 명시하였음

□ 동 조례안과 관련한 서울시 타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7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임(성동, 강서, 구로, 노원, 도봉, 용산, 은평구)

□ 2016년 생활난으로 생리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 ‘깔창 생리대’를 쓴다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연(일명 ‘깔창 생리대’ 사건) 이 알려진 이후,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해오고 있음

- 그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불편과 높은 생리용품 가격 때문에 보편적인 지급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

□ 이에 정부는 2021년 3월 24일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을 개정하여 그동안 선별적 지원방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

☞ 기존 : ‘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’(임의규정)

☞ 개정 : ‘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’ (강행규정)

- 다만,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별 지원을 유지하되 지원대상 연령을 만 9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

□ 서울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(제19조 7항)에 의하면, ‘시장은 여성 어린이·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

지원할 수 있다’라고 명시함(22.7.11. 신설)

□ 광진구에서도 현재 정부사업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 현황은 다음과 같음

▸ **사업개요**

○ 추진근거: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

○ 지원대상: 만9세 ~ 만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

- 연령기준: 1999.1.1.~2014.12.31.사이 출생자(연기준 만 나이 산정)

- 소득기준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 가구

○ 지원내용: ‘국민행복카드’를 통한 전자바우처 지원

- 연 최대 156,000원(월13,000원, 신청월 기준 지원)

○ 신청기간: 연중

○ 신청방법: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신청

▸ **지원절차**

신청	⇨	확인·접수	⇨	지원결정	⇨	카드신청 (카드사, 은행)	⇨	카드발급	⇨	구매 (온오프라인)	⇨	지급·정산
이용자		주민센터		구 (아동청소년과)		이용자		카드사		이용자		구 (아동청소년과)

▸ **소요예산**: 총 152,277천원(국비 45,683천원, 시비 53,297천원, 구비 53,297천원)

○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편성목	금액	산출기초
총 계	152,277	국 30: 시 35: 구35
사회보장적 수혜금	152,277	-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156,000원×976명≒152,277천원

□ 만9세~24세 광진구 여성청소년 인구는 26,221 명임(22.12.31.기준)

□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음

○ 이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 국가사업(여성가족부)으로 매년 여성청소년 지원 연령과 금액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, 보편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됨

○ 집행부는 대상자들에게 보편적 지원을 위한 소요 예산을 고려해 향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

○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○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